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 -5호

「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10년 3월말에 건립 준공됨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을 증진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대시설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50%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함.(안 제5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

2월 22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
의회의장(참조: 문교사회전문위원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
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사용료)” 를 “(사용료 등)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부대시설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감면한다. 다만,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.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
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·그 유족과 가족
6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
7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<u>사용료</u>) ①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<u>사용료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부대시설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감면한다. 다만,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.</u> 1. <u>65세 이상인 자</u> 2.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에 의한 장애인 3. 「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 4. 「 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 공자·그 유족과 가족 5. 「 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 자·그 유족과 가족 6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</u> 7. <u>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u>